2022학년도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을 위한

완주특수교육 운영계획





목 차

1. 완수특수교육의 기서	
1. 전라북도 교육 기본 방향	. :
2. 전라북도 특수교육 비전 및 목표	
3. 완주교육의 기본 방향	
4. 완주특수교육의 비전 및 목표	• 6
Ⅱ. 완주특수교육 현황	
1.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
2. 특수교육보조인력 현황	13
3.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13
Ⅲ.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1.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요	15
2. 2021학년도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실적	20
V. 완주특수교육 세부 운영 계획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27
2. 통합교육 환경 조성	39
3. 진로·직업교육 지원 ······	47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50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6]
V. 부록	
1. 완주 관내 특수학급 현황	79
2. 2022 특수교육지원센터 추진업무	82
3 2022 트수교육지워센터 추진언무벽 예산	84

함께 걸음으로 행복한 완주특수교육

I. 완주특수교육의 기저

- 전라북도 교육 기본 방향
- 전라북도 특수교육 비전 및 목표
- 완주교육의 기본 방향
- 완주특수교육의 비전 및 목표

1. 전라북도 교육 기본 방향



2. 전라북도 특수교육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사회통합 실현

목표

-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강화
-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3. 완주교육 기본 방향



4. 완주특수교육의 비전 및 목표

비전

함께 걸음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

목 표

가정, 학교, 마을이 협력하는 특수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지원센터 체계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제공

중점과제

- Ⅱ 특수교육과정 운영지원
- ② 통합교육환경 조성
- ③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④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
-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강화

함께 걸음으로 행복한 완주특수교육

Ⅱ. 완주특수교육 현황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 특수교육지원인력 현황
-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1.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기준일 2022. 3. 1.]

가 특수학급 설치교 학생 현황

	유치유	원	2	초등학.	亚	중학교			고등학교			계		
亚	학급	학생	卫	학급	학생	교	학급	학생	교	학급	학생	교	학급	학생
3	4	15 (3)	20	20	66 (17)	8	9	34 (7)	4	4	24 (11)	35	37	139 (38)

- ※ 2022학년도 봉서유치원, 삼례중앙초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신설
- ※ ()는 특수학급 설치교 내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학생수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학생 현황

	유치유	원	5	초등학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원	학급	학생	교	학급	학생	교	학급	학생	교	학급	학생	교	학급	학생
2	2	2	5	10	10	1	3	3	•	•	•	8	15	15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년별 현황

	ب	유치원	1		초등학교					중학교			<u>ച</u>			
	만 3 세	만 4 세	만 5 세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5 학 년	6 학 년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계
특수학급	1	10	4	6	10	14	8	13	15	6	15	13	8	7	9	139
일반학급	1	1	3	4	5	3	6	5	4	2	5	3	2	7	2	53
계	2	11 20	7	10	15	17	14 3	18	19	8	20 44	16	10	14 35	11	192

※ 초등학교 취학유예 특수교육대상학생 1명 제외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유형별 현황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발달 지체	건강 장애	계
유치원				1		3			16		20
특수학급				1		2			12		15
일반학급						1			4		5
초등학교		4	37	9	2	10	8		22	1	93
특수학급		3	30	3	1	7	4		17		65
일반학급		1	7	6	1	3	4		5	1	28
중학교		1	32	4	1	3	1			2	44
특수학급			25	4		3	1				33
일반학급		1	7		1					2	11
고등학교		1	31	1		2					35
특수학급			23			2					25
일반학급		1	8	1							10
계		6	100	15	3	18	9		38	3	192
/1		3.1%	52.1%	7.8%	1.6%	9.4%	4.7%		19.8%	1.5%	134

마 관내 특수학교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순	
전북 푸른학교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5 학 년	6 학 년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전 공 1	전 공 2	순회학급	계
학급수	1	1	1	2	2	1	1	2	2	2	2	2	1	1	1	22
학생수	6	6	6	12	11 (1)	5	6	10	11	10	11	7 (1)	7	8	(2)	116
계		46						27			28		1	5		

※ ()는 재택순회 대상 학생 수

2. 특수교육지원인력 현황

[기준일 2022. 3. 1.]

구분			ę]원수			비고		
一一世	유	유 초 중 고 특				계	H 37		
특수교육지도사	3	5	3		16	27	봉동유치원(2), 봉서유치원, 간중초, 봉서초, 소양서초, 청명초, 태봉초, 소양중, 용진중, 완주중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	1	5	5	2	5	18	봉서유치원, 삼우초, 삼례초, 소양서초, 송광초(2), 삼례중(3), 소양중, 용진중, 완주고(2)		

3.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기준일 2022. 3. 1.]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현황

센터장 (교육지원과장)	담당 장학사	교사	운영강사	특수행정 실무사	계
1	1	5	1	1	9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현황

o) >]	특수교육지원	nj =		
위치	실명	수	면적	비고
	사무실	1	70.70 m²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975-94 완주교육지원청 별관 1층	모둠활동실	1	53.67 m²	영유아교육, 문화·체육활동
	자료실	1	29.26 m²	
	직업교육1실	1	55.00 m²	일상생활훈련 및 공예 활동
	직업교육2실	1	70.00 m²	제과제빵 및 요리활동
	진단평가실	1	16.44 m²	
	카페테리아	1		완주교육지원청 시설 활용 바리스타 직무교육

함께 걸음으로 행복한 완주특수교육

Ⅲ.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요
- 2021학년도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실적

1.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요

가 운영 목적

- ◎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체제 구축 및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완주특수교육의 저변 확대

가 운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2022년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전북특수교육 2022-64)

운영 방침

◎ 특수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상담, 장애 영·유아교육, 교수·학습지원, 교원 및 보조인력 연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직업교육지원 등 전문성과 다양성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
-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 교육지원 제공
- 사회 변화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의 확대 및 특수교육력 제고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성화
 - 지역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성화 운영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 지원하고, 학생의 인권보호 및 현장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팀 구성
- ◎ 특수교육기관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운영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 상호간의 업무 지원 및 사안 공동 대처를 통한 지원센터 발전 도모
 -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협력 운영체계 구축
 - 익산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권역

진로직업거점 권역	거점 역할		
익산권역: 완주, 진안, 무주	① 진로직업 직무분석 등 운영 사례 공유 ② 진로직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안내		



조직 및 업무

센터장(교육지원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총괄

협조.지원기관

전라북도교육청 도특수교육지원센터 완주교육지원청

부센터장(담당장학사)

기획 및 운영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 완주군청, 완주경찰서 완주군정신건강증진센터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완주군드림스타트 마음사랑병원 완주군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전북협회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완주군장애인부모회

특수교육 지원

- 순회교육
-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 특수교육연수
- 특수교사동이리 운영 지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
- 건강장애학생및 보호필요학생지원

진단.평가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 배치를 위한 상담 지원
 - T 지원 | 그 | 활

통합교육 지원

- 특수학급 미 설치교 통합 교육 지원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프로 그램 및 체험 활동 지원
-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진로.직업 교육지원

- 직업상담.평가
- 직업프로그램
- 사업체현장교육
- •취업정보 . 취업과정 지원
- 지역사업체 발굴

관련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
- 방과후학교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교재.교구 대여 및 지원
- 상담 및 가족 지원
- •지역사회유관 기관 협력

인권지원단 운영

- 정기현장지원및 특별현장지원
- 더봄학생 지원
- 장애인권보호 및 교육지원 (성교육 등)
- 장애학생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홍보

마 업무 분장

담당자	담당 업무
센터장 김영아 (교육지원과장)	○ 특수교육 업무 총괄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총괄
부센터장 경미란 (장학사)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및 예산 기획 총괄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체험학습 대상자 선발 ○ 특수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관리
팀장 초등특수교사 최혜진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및 예산 운영 전반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 특수교육지원센터 예·결산 업무 ○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요구 자료 작성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정기현장지원, 성교육, 인권실태조사 등) ○ 순회교육 업무 및 관리 지원 ○ 초등특수교사 동아리 운영 ○ 건강장애 및 보호필요학생 지원 ○ 진단·평가 및 순회·통합교육 지원
유아특수교사 강수아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업무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급 정보관리 ○ 유아특수교사 동아리 운영 ○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홍보 ○ 장애 영·유아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 영·유아 관련 업무(무상교육비, 대상유아배치 학급지원) ○ 진단·평가 및 순회·통합교육 지원
초등특수교사 이호진	 ○ 통합교육 관련(실태조사, 통합교육지원비 등) ○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찾아가는 장애공감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유·초등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유·초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IT-페스티벌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지원(자율선택과제, 노후화 개선 등) ○ 진단·평가 및 순회·통합교육 지원

담당자	담당 업무
중등특수교사 최유나	 ○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 진로·직업 관련 업무 (직업교육실 관리, 협력기관 구축, 진로직업거점센터 관련) ○ 치료지원 전반, 치료지원비 지원(꿈활짝카드) ○ 치료지원 모니터링팀 운영(치료지원 유관기관 점검·모니터링) ○ 특수교육 통계·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작성 ○ 진단·평가 및 순회·통합교육 지원 ○ 중등특수교사 동아리 운영
중등특수교사 김기숙	 ○ 특수교육 연수 운영 (특수교사, 통합교사, 특수교육지원인력,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편의시설 ○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지원(연수, 컨설팅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련(인건비, 교육관리) ○ 중등 진로직업 현장체험학습 운영 ○ 진단·평가 및 순회·통합교육 지원
초특특수 운영강사 최지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학 중 프로그램 ○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가족캠프)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교육 및 동아리 운영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자료실 관리 ○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연계 업무 ○ 감각장애학생 지원 ○ 진단·평가 및 통합교육 지원
특수행정실무사 이광열	 ○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 업무 지원 (자료 취합, 문서 작성지원,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여비 관련 업무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 제공 ○ 특수교육 홍보 및 보도자료 제작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재교구 및 비품 관리 ○ 특수교육지원센터 물품 구입 ○ 주간업무 취합 및 제출

2. 2021학년도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실적

순	사업명	분야/영역	추진내용
1	2021 완주특수교육 운영계획 안내 및 관내 교사 협의회	특수교사 연수	 ○ 일시: 2021.2.24.(수) 14:00~18:00 ○ 대상: 관내 특수학급 담당교사(유초/중등)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2층 세미나실 ○ 내용: 2021 완주특수교육운영계획 설명 및 협의회 실시
2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및 협의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기간: 2021.3월.~2021.12월. ○ 대상: 관내 특수학급·특수학교 더봄 학생 ○ 내용: 장애학생 인권지원 관련 현황 파악 및 인권침해 사안에 따른 유관기관 연계 지원
3	제 1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지원	 ○ 일시: 2021.3.25.(목) 15:00~17:00 ○ 장소: 특수교육지원센터 모둠활동실 ○ 내용: 순회교육, 순회치료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 및 신규, 재배치(5명)
4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실시	순회교육	 ○ 기간: 2021.3월.~2022.2월. ○ 대상: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5명 (유8명, 초6명, 중 1명) ○ 장소: 관내 특수학급 미설치교(9개교) ○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초기본학습 및 생활지도, 통합교육 지원
5	상반기 진로직업프로그램 "우리가 꿈꾸는 내 일!(My Job!)"	직업준비 프로그램 지원	 ○ 기간: 2021.4월.~7월.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120명 ○ 장소: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급 ○ 내용: 제과제빵, 목공, 도예, 요리, 원예 등
6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어울림으로 하나되는 우리들"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 기간: 2021.6월.~11월. ○ 대상: 유·초등학교 14개교 25학급 (통합학급 학생 345명) ○ 장소: 신청학교 통합학급 교실 및 강당 ○ 내용: 퍼포먼스미술을 통한 통합교육활동
7	찾아가는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과정 지원	 ○ 기간: 2021.4월.~7월. ○ 대상: 유·초등학교 특수학급 21학급 ○ 장소: 특수학급 교실 ○ 내용: 책놀이,과학,미술,음악 활동

순	사업명	분야/영역	추진내용
8	문화예술 동아리 "더디가도 함께 가요"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	 ○ 기간: 2021.4월~12월. 월,금 14:00~16:00 ○ 대상: 초·중 특수교육대상학생 36명 ○ 장소: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완주중), 삼례중, 우리아이요리스토리 ○ 내용: 난타(칼림바), 원예, 아동요리
9	체육 동아리 "더디가도 함께 가요"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	 ○ 기간: 2021.4월~12월. 화,목 14:00~16:00 ○ 대상: 초·중 특수교육대상학생 16명 ○ 장소: 헬로키즈풀 ○ 내용: 수영
10	학부모 동아리 "엄마는 바리스타"	가족지원	 ○ 일시: 2021.4월~11월. 수 10:00~12:00 - 상하반기 2팀 운영 ○ 장소: 솜리학원 혁신캠퍼스 ○ 대상: 특수학급 학생 학부모(20명) ○ 내용: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10	유·초등 특수교사 진로탐색 역량강화 자율연수	특수교사 연수	 ○ 기간: 2021.4월.~11월. 14:30~16:30 (3회) ○ 대상: 관내 특수교사 25명 ○ 장소: 특수교육지원센터 ○ 내용: 원예 활동
11	제 1차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특수교사 연수	 ○ 기간: 2021.4.27.(화) 14:30~17:00 ○ 대상: 관내 통합교육담당교사 41명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내용: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소통방법
12	제 2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지원	 ○ 일시: 2021.5.6.(목) 14:00~18:00 ○ 장소: WEE센터 집단상담실 ○ 내용: 1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 진단·평가(재진단·평가 포함) 20명, 선정·배치 11명.
13	제1차 특수학급 담당교사 연수	특수교육 연수	 ○ 일시: 2021.5.11.(화) 14:30~17:30 ○ 대상: 관내 특수교사 25명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내용: 플로어타임 기법을 활용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

순	사업명	분야/영역	추진내용
14	제 3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지원	 ○ 일시: 2021.7.8.(목) 14:00~18:00 ○ 장소: WEE센터 집단상담실 ○ 내용: 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 진단·평가(재진단·평가 포함) 11명, 선정·배치 6명
15	제2차 특수학급 담당교사 연수	특수교육 연수	 ○ 일시: 2021.7.6.(화) 14:30~17:00 2021.7.13.(화) 14:30~17:00 ○ 대상: 관내 특수교사 24명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내용: 보드게임을 활용한 수업, 실습 (2회기 진행)
16	하반기 찾아가는 진로직업프로그램 "우리가 꿈꾸는 내 일!(My Job!)"	직업준비 프로그램 지원	 ○ 기간: 2021.9월.~12월.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125명 ○ 장소: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 ○ 내용: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17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기간: 2021.9월.~12월.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124명 ○ 장소: 초·중·고 특수학급 33학급 ○ 내용: 올바른 성인권 및 경계존중 예방 교육 (학급 당 3~4회기씩)
18	제 4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지원	 ○ 일시: 2020.9.9.(목) 14:00~18:00 ○ 장소: WEE센터 집단상담실 ○ 내용: 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 진단·평가 11명, 선정·배치 5명, 재배치(상급학교 진학 포함) 30명
19	중등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 자율 연수	특수교사 연수	 ○ 기간: 2020.10.7.~10.28. (2회) ○ 장소: 나무풍경, 비즌도예 ○ 대상: 관내 중등 특수교사 9명 ○ 내용: 다재다능한 진로와 직업 메이커교육
20	제 2차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특수교사 연수	 ○ 기간: 2021.10.12.(화) 14:30~17:00 ○ 대상: 관내 통합교육담당교사 30명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내용: 작가와 함께 하는 통합교육 - 청각장애인이 바라본 통합교육

순	사업명	분야/영역	추진내용	
21	특수교육지원센터 "사랑 가득! 행복 두배! 가족캠프"	가족지원	 ○ 일시: 2021.10.21.(목)~22.(금)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11가족 ○ 장소: 고창상하농원 ○ 내용: 가족 체험프로그램, 편지로 나누는 보이는 라디오 	
22	제 5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일시: 2021.11.11.(목15:00~18:00○ 내용: 4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보류 심사- 상급학급 진학포함 재배치 10명	
23	제 6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 일시: 2021.12.6.(월) 16:00~17:00 ○ 내용: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24	제 7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지원	○ 일시: 2021.12.15.(수) 14:00~17:00 ○ 내용: 4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 진단·평가 12명, 선정·배치 8명 재배치 5명, 취학유예 1명.	
25	2021학년도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강화 연수	특수교육 연수	○ 일시: 2022.2.14.(월)~16.(수) ○ 대상: 관내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도사 및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 ○ 장소: 비대면연수(ZOOM) ○ 내용: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방안 및 교양	
26	제8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지원	○ 일시: 2022.2.18.(금) 14:00~16:00 ○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 진단·평가 1명, 선정·배치 1명 재배치 10명, 유예 1명.	

함께 걸음으로 행복한 완주특수교육

IV. 완주특수교육 세부 운영 계획

-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 통합교육 환경 조성
- 진로·직업교육 지원
-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서비스 강화

1

특수교육과정 운영

1 - 1

특수교육기관 확충 지원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 특성에 맞는 학습권 보장

나.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국정과제 51-2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다. 방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학급당 정원 수 준수

연도	유	초	중	고	전공과	비고
2022	4	6	6	7	9	전공과는 전라북도 자체 정원임

- ◎ 특수학교(급)의 과밀학급 해소
- ◎ 특수학급 편성 요건(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 제공)
 - 신·증설 기준

적용대상	구분	기준	
특수학급 및	신설	특수교육 학생 수가 3명 이상이고 3년 이상 유지 가능 학교	
특수학교	증설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증설 후 3년 이상 유지 가능 학교	

- 편성 요건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제외
 -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규교실 확보

라. 추진내용

◎ 완주 관내 특수학급 신·증설 및 감축 현황

[단위:학급, 기준일 2022. 3. 1.]

연도		비고			
	유	초	중	고	비꼬
2021		1 (이성초)			
2022	2 (봉서유치원, 삼례중앙초병설유치원)		△1 (삼례중)		

- ◎ 특수교육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노력 지속
 - 완주 관내 특수학급 과밀 현황: 없음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배치
 - 시·군을 달리하는 학교 배치는 지양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는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 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지원 및 협조 사항

- ◎ 완주 관내 소규모 학교의 특수학급 증설 지양
- ◎ 신증설 특수학급 지원 및 노후 환경 개선 연차적 지원(전라북도교육청)
- 2023학년도 학급 수용 계획(2022년 11월) 수립
 - 2023학년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9월 실시 예정 (유아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등록 이전 실시)
 - 2023학년도 특수학급 수요조사(11월) 시 2023학년도 특수학급 예정 학생수는 2023.3.1.자로 각 학교에 선정·배치 받은 학생 수만 포함하여 작성

1-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가. 목적

- ◎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강화
- ◎ 특수학교(급) 교원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대

나. 근거

-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향상)

다. 방침

- ◎ 완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대상으로 실시
- ◎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연수 실시

라. 추진내용

- ◎ 관내 특수교사 연구회(동아리) 조직 및 자율 연수 운영 활성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중 유·초·중등 급별 동아리(자율연수) 운영 지원
 - 도교육청 현장중심의 현안 과제별(진로직업, 정보예술, 교과교육, 정보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특수교육 담당 교원, 통합교육 담당 교원 연수 및 협의회 실시
- ◎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교원 상처치유 프로그램 이용 방법 안내와 운영(교원인사과)

마. 지원 및 협조 사항

◎ 특수교육지원단 및 특수교사 연구회(동아리) 적극적 참여 협조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워

가. 목적

-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

나. 근거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다. 추진내용

-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편성·운영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에 특수교육 운영계획 포함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일반학교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
 -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지양: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 노력
 - 학년 초 통합학급 적응 기간은 학교 상황과 학생 장애 특성에 맞게 자율적 운영
- ◎ 특수교육대상 학생 위기 상황 시 학습권 보호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서적 위기로 인한 유예 및 면제 지양
 - 정서 문제(우울감, 감정조절 능력 저하, 공격적 행동 등)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 급증으로 인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 ※ 2022 장애학생 위기대응 관련 매뉴얼(전라북도교육청) 참고
 -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또는 심리안정실 운영 활성화
 -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교사와의 협력 강화

- ◎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지원계획 포함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통합학급 수업 참여 범위 결정
 - 일반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통합학급 교수 · 학습 활동 참여
 -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수업 방법(협력 교수 등) 개선을 위한 노력
 -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지원단 활용
- ◎ 통합학급 교사의 책무성 강화
 -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수업 방법(협력 교수 등) 개선을 위한 노력
 - 통합학급 교사 대상 특수교육 이해 연수
- ◎ 장애학생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구	분	작성 방법		
통합학급에서 3 전체를 참여		교과담당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함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 교과편성 시간을 나누어 참여하는 교과		교과담당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시 특수학급 참여 시간의 교육활 동 및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음		
특수학급에서 교과 편성시간 전체를 참여하는 교과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 내용이 있을 경우	 교과담당교사는 특수교사에게 교과의 지도계획 및 평가 계획을 제공하고, 특수교사는 특수학급 교육 내용 및 평가내용을 교과담당교사와 공유함 교과담당교사는 공유 내용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 입력함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작성이 어려울 경우	 장애가 심하여 교과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특수학급에서 생활기능 중심의 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기능한 태도, 노력, 성장 등의 내용을 기재 하되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장애학생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절차(p10)'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교과 세부능력 특이사항을 기록할 수 있음 예시) 개별교육에 따라 특이사항 없음 		

※ 참고 : 교육부(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 자료)

- ◎ 삶을 가꾸는 생활중심 교육과정 운영
 -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생활중심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안에 환경교육 편성 및 운영: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환경 위 기 대처 교육 등
 - 사회참여 교육활동 프로그램 추진
 - · 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이상 학생에 대한 선거 참여 방법 및 바람직한 사회참여 활동 교육 계획 및 운영
 - 민주시민 교육 지원을 위한 참여와 실천 중심 교육활동 운영

라. 지원 및 협조 사항

- ◎ 특수학급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자율선택과제)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일상생활, 사회적응, 직업훈력 프로그램 활동
 - 정서지원 및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모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선정(4월 중, 50학급 지원 예정)
 - 학급당 1,000천원~1,500천원 기준(학급 당 학생 수 고려)
-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진학 안내
 - 시기: 2022.6 ~ 8월 중
 - 관내 취(진)학 예정인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 ※ 차기년도(2023학년도) 취학·진학을 위한 신규 선정·배치 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차기년도 부터 지원함을 미리 안내할 것

l-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지원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특수교육 성과 제고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다. 방침

- ◎ 특수학급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 특수교육대상학새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과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 자료 요청: 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70-7606)

구분	내 용	시기
개별화교육 지원팀 구성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통합학급교사, 학부모 참여(의무) 및 충분한 안내와 의견 수렴 절차 준수 	3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입학교로 14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3월

구분	내용	시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 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포함	3월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결과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평가 실행평가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학기말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반영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특수교육지원인력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등) 활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관련 기관과 전문가와의 연계성 강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지원 계획 수립: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망 구축 지원 	

마. 지원 및 협조사항

- ◎ 특수교육관련서비스(치료지원 등)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작성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통합학급교사, 학부모의 의견 수렴
- ◎ 장애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 실시
- ◎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나이스 관련 사항
 - 2020학년도 특수학급 배부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 참고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탑재)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 계획 예시 자료 ■

개별화교육계획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및 개별화교육시작 및 종결 시기

이 름		개별화교육지원팀	1학기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팀 장(교 감)	
학 년 반	학년 반	팀 원(보 호 자)	
장애유형(등급)		팀 원(진로담당)	
배치결과통지서 번호		팀 원(일반교사)	
주 소		팀 원(특수업무)	
T		팀원(관련서비스)	
배치 유형	■ 일반학급 배치	□ 특수학급 배치	
1학기 개별화교육	1학기	2022 03 0	1 ~ 2022.08.00
시작 및 종결 시기	1억기	2022.03.0	1 ~ ZUZZ.UO.

2.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1학기
치료 지원	
방과후활동 지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3. 현재 학습 수행 수준

현재학습	내 용
"""	
수행수준	
1	

4.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영 역	1학기
교육 목표	
교육 내 용	(예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모든 교육과정 활동에서 교육
교육 방법	목표·내용·방법 및 평가 계획의 수정 없이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함.
평가 계획	

-5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가. 목적

-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촉진
- ◎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력 향상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유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다. 방침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지원 강화
- ◎ 영·유아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 및 지원 사업 홍보
- ◎ 영·유아 조기발견을 위해 관내 장애 영·유아 현황 및 실태 파악

구분	대상	내용	시기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관내 유치원 재원 장애유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이행 철저 ※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 입학 희망 시 법적의무교육대상자로 우선 입학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영아 선정시 필요한 교육지원및 관련서비스 결정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공립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 / 사립 월 381,000원 이내 실비 학기별 지원 - 취학유예대상자는 불가) 	연중

구분	대상	내용	시기	
순회교육 지원	미소속,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의 순회교육 지원 - 미소속 영유아의 경우 재택 또는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순회교육 실시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및 선별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 홍보 리플릿 제작 관내 관계기관 배포 -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및 선별검사 실시 - 장애 영·유아 현황 조사 및 관련 상담 -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 안내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	영유아 위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유아 및 학부모	입학 전 프로그램 운영(부모상담, 방문체험)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간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	12월	
장애영아 교육지원			연중	

마. 지원 및 협조사항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령기 의무교육 이행 독려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대면 심의 실시 ※ 취학유예 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관리되며,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지원 보류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부모상담 및 초등학교 방문 등 입학 전/초기 프로그램 운영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 참고자료: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지원 가이드북 '경기교육청(www.goe.go.kr)-통합자료실-특수교육과-과 자료실' 탑재

_6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

가. 목적

● 장애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나. 근거

-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다. 방침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 특수교육생상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여기회 제공
 - 장애학생 e-스포츠 운영 확대 지원
- ◎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체육 활동 기관 및 인력 발굴
- ◎ 지역별 특색있는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라. 추진내용

세부내용	대상	내용	시기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신청자	- 문화예술(난타, 아동요리, 원예), 체육(수영) 등 방과후 동아리 운영	4~7월 9~12월
방학 프로그램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신청자	- 방학 중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8월

마. 지원 및 협조 사항

● 장애학생 e-스포츠 운영 확대 및 전북 IT-페스티벌 대회 적극 참여 :특수학교(급) 1종목 선정 및 운영

2

통합교육 여건 조성

2 -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목적

-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 통합교육 실행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나.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다. 방침

- ◎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 ◎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구분	대상	내용	시기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 통합교육 인력풀) 통합교육지원단 협의회 실시 (역할 및 방향, 담당 학교 지정 등) 	3월

구분	대상	내용	시기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내용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 및 상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지원팀 회의) 수립 지원 통합학급담당 일반교원의 특수교육직무연수 안내(원격 또는 집합연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방과후지원, 치료 지원, 통학비지원, 지원인력 지원 안내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통합교육 관련 연수 통합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통합교육 관련 자료 개발 등 	연중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특수교육대상 유아 재원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 여건 조성 중증장애유아 배치 시 지원인력 우선 배치 신설 유치원 컨설팅 지원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교사 협업을 위한 연수 및 정보제공 강화 	연중

마. 지원 및 협조사항

- ◎ 완주 관내 찾아가는 통합교육지원단 참여
 - 학교의 요청에 따라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 관내 특수학급 미설치교 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한옥숲유치원 송광초병설유치원	대덕초등학교, 봉성초등학교, 운주초등학교, 청완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	삼우중학교		8개교

- ◎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 참여
 - 통합학급 프로그램 지원 신청(전북 100학급 지원)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가. 목적

●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성과 제고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다. 방침

- ◎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역량강화
- ◎ 통합학급 교사 지원 강화

라. 추진내용

구분	대상	내용	시기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역량강화	일반학교 관리자	- 일반학교 교장, 원장 특수교육 연수 이수 (매년 3시간 이상 연수 이수) ※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에 참여 권장	
통합학급 교사 지원	통합학급 담임교사 및 업무담당교사	학교 현장에서 통합교육의 실제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연수 실시	4월 9월

마. 지원 및 협조사항

- ◎ 일반학교 교장, 원장 대상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관련 연수 과정 안내
- 완주교육지원청 통합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4월, 9월 예정) 시 통합교육 담당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2-3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 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다. 방침

- ◎ 순회교육대상학생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선정
- 순회교육 운영은 이동거리·업무 등을 고려, 교육장의 판단으로 최대한 지원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능력·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
- ◎ 순회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관리 철저(담당교사와 수시협의)

구분	내용
순회교육 지원 대상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 특수교육대상영유아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 수혜 가능, 무상교육비와 중복 수혜 불가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며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구분		내용				
		리교육 신청을 통해 특수교육운영위 면심사 가능	원회의 심사 후 선정			
	시기	내용	주체			
대상학생		순회교육 신청	학부모, 해당학교			
선정	3월 1~2주	신규 순회교육 신청학생에 대한 진단 및 면담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3월 3주	대상자 심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3월 4주	선정 결과 통보 및 순회교육 실시	순회교사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순회교육은 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에 운영 ※ 돌봄, 방과후 시간에는 순회교육의 지원이 불가 순회교육을 사유로 학생의 교내외 활동은 제한되거나 배제 금지 개별화교육계획은 소속 학교에서 작성하며 이를 통합학급 교사와 순회교사가 협의하여 순회교육계획에 반영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라 공통교육과정 또는 특수교육교육과정,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실시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관리 철저(담임교사와 수시 협의, 재택 순회교육의 경우 대상학생 상황을 소속 학교에 수시 통보) 순회교육 지원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 등의 운영비 지원 					
순회교육 중단	 시기: 수시로 가능 대상: 재배치·교육지원종료 등으로 수요가 사라질 경우, 또는 순회교육 대상학생 중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소신청을 한 학생 중단절차: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와 담당교사 간 사전협의 ⇒ 순회교육 취소 신청서 교육청 제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결과를 학교로 안내 					

마. 지원 및 협조사항

◎ 순회교육 지원 대상 학교에서는 순회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

2-4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가. 목적

◎ 각급 학교의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나.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다. 세부 내용

- ◎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적용 기관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이행 철저
 - 각급 학교 자체 예산 수립
 - 정당한 편의제공 세부 사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제14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4조 및 별표3)

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 내용
	ㅇ 교육보조인력 배치	ㅇ 교육보조인력 배치(필요시)
	o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 보조기구 등 대여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책상, 각종 보완 ·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 대여
교육	○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 112 - 34	이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교육과정 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 내용
		o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
	ㅇ 그 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교육	사항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정보접근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 되는 <u>웹사이트</u>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의사소통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 텍스트파일, 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모니터링 실시

-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노력
 - 장애인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 재원확보 노력(도교육청 재배정사업)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 및 설치 점검 강화
 - 완주교육지원청 내 교장·원장 연수 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2021년 장애인 학교 급별 편의시설 설치율]

[2021. 12. 31.기준]

		,	매개시석	년 내부시설 -		위생시설 (화장실)		안내시설						
연도	트별 설	치율	주출 입구 접근 로	장애 인 주차 구역	주출 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 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 기	대변 기	소변 기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설 치 율 (%)
2019	학교	1,268	1,207	1,244	1,168	1,182	1,148	1,165	1,138	1,149	736	754	743	
20 <u>1</u> 9	비율 (%)		95.2	98.1	92.1	93.2	90.5	91.9	89.7	90.6	96.0	98.3	96.9	95.0
2020	학교	1,268	1,222	1,218	1,177	1,212	1,238	1,179	1,180	1,142	725	725	708	
2020	비 <u>율</u> (%)		97.1	97.4	95.3	97.0	98.3	95.0	95.7	93.3	95.0	95.2	94.0	95.6
2021	학교	1,259	1,252	1,238	1,219	1,231	1,250	1,214	1,180	1,145	733	749	734	
년도	비율 (%)		99.4	98.3	96.8	97.8	99.3	96.4	93.7	90.9	95.1	97.1	95.2	96.4

마. 지원 및 협조사항

- ◎ 학교 자체예산 설치 의무시설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신청 시 미설치교 우선 지원(전라북도교육청)
 - 3개 의무 항목(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소변기 핸드레일) 자체 예산 적극 확보
 - 완주교육지원청 내 교장·원장 연수 시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안내

3 진로·직업교육 지원

3-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가. 목적

- ◎ 장애학생 미래생활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역량 등) 강화
- ◎ 개인의 진로희망에 따른 사회참여기회(진학, 취업 등) 확대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다. 방침

-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진로발달단계(초·중·고)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 ◎ 직업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생 진로역량의 체계적 관리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직업평가 지원
- ◎ 지역사회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

라. 추진내용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시기
진로직업프로그램 (제과제빵·바리스 타·목공 등)	초·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 총 6~8회 실시 예정(교육과정) - 회기별 2시간씩 운영 - 장소: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각급 학교	4월 ~12월
진로 · 직업 현장체험학습	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 1일 체험학습 - 장소 미정(수요 반영) - 진로·직업 탐색 및 체험 ※ 현장체험학습 미실시 시 진로 관련 대체 프로그램 진행	10월 예정

마. 지원 및 협조사항

-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로직업프로그램 참여 확대
-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전환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장
- ◎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도교육청,'22.2~4월)
- 진로직업교육 교사 동아리 선정·운영 참여(도교육청,'22.4월~)
-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분야별 운영지원 계획 참여(도교육청,'22.4월~)
- ◎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현황 제출('22.11월)
- ◎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및 점검 철저
 -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안내('22.3.~4월), 운영 컨설팅 구성('22.1.~4월 중)
 - 현장실습 운영 점검 실행(상반기: '22.5~6월, 하반기: '22.10~11월)
 - 현장실습 운영 점검 결과 제출('22.12월)

3-2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

가. 목적

- ◎ 장애학생 미래생활역량(자립생활 및 여가생활 등) 강화
- 지역사회 안의 다양한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진로 탐색과 일상생활 적응 능력 향상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다. 방침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지역사회 안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력향상 및 지역사회 정보제공
- ◎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완주 관내 특수학급과 연계 운영
- ◎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분절된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와 지역사회 공간에서 실천적 교육 활동 프로그램 구성

사업명	대상	내용	시기
연합 현장체험학습	유·초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 1일 현장체험학습(2회 예정) - 장소 미정 - 지역사회 적응활동	학기별 1회

4

특수교육 지워체제

4-1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체제 강화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나.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 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다. 방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용보조공학기기 지원체제 구축
- ◎ 교육현장의 수요조사 후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확충
- ◎ 보조공학기기를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 강화
-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기기 및 교수학습자료 대여 시스템 운영
- ◎ 보조공학기기의 유지·보수 철저
- ◎ 장애유형별 거점센터를 통한 보조공학기기 대여/지원 시스템 구축

센터명	설치 장소	비고
청각장애특성화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청각장애
지체장애특성화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지체장애
시각장애특성화센터	전북맹아학교	시각장애

라.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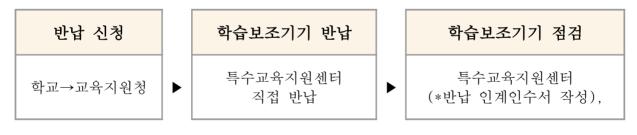
◎ 지원 절차

준비 단계 계획 단계 지위 단계 평가 단계 • 유관기관 • 수요조사 분석 • 보조공학기기 대여 • 수요자 만족도 인프라 구축 에 따른 기기 구 • 사용점검 및 A/S관리 • 관리실태 점검 • 보조공학기기 입 및 확보 • 보조공학 활용 연수 • 결과분석 환류 수요조사

◎ 대여절차



◎ 반납 절차



마. 지원 및 협조 사항

- ◎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의 대여/반납 절차 준수
 - 대여 기간: 최대 1년
 - 대여 기간 만료 후 학년 말 반납이 원칙(단,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대여 연장신청서 제출 가능)

4-2 장애 공감 문화 조성

가. 목적

●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 장애인식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나.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장애인학생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다. 방침

- ◎ 일반학교 장애인식개선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운영
 - 특수학급 미설치교 우선 지원
 - 문화 ·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문조사 및 면담 실시하여 교육의 변화 파악
-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영역별 특성, 예절, 교우관계 형성, 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행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 이해 내용 지도자료 활용(사회적 약자 관련)
- ◎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행
 - 기관 및 학교 연간계획에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일정 포함
 - 전문 강사, 교육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행

라. 추진내용

사업명	대상	내용	시기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학 중 유.초.중.고등학교	 장애인권강사, 베리어프리영화 등 콘텐츠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권 교육 그림책 및 책놀이를 통한 장애인 식개선 활동 신청교 통합학급 단위로 실시 교육 실시 및 피드백 	4월~
각급 학교와 교육형	행정기관 직원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장애 인식개선 교육	학교 및 기관 전직원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원격교육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 기관별 직장교육 연간계획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일정 포함 - 전문 강사(장애인 당사자 포함), 교육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행	

마. 지원 및 협조 사항

- ◎ 학생 대상 연 2회 장애이해교육 실행
- ◎ 교직원 대상 연 1회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

4-3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가. 목적

- ◎ 장애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과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자기 보호 능력 신장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내실화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다. 방침

- ◎ 장애학생 인권 보호 종합대책 내실화: 인권종합대책 추진내용 점검(연 1회)
-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운영 강화
- ◎ 정기현장지원을 통한 관내 더봄학생 관리와 사안 발생 시 특별지원 제공
- ◎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성교육 및 인권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행 - 자기보호 역량 강화

세부내용	대상	내용	시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특수교사, 경찰, 성교육전문가 등 전문위원	- 인권지원단 설치·운영 - 내·외부 전문위원(8명 이상)으로 구성, 지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	3월

세부내용	대상	내용	시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	관내 더봄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 인권지원단 운영 홍보 - 월 1회 이상 정기 현장지원 실시 (방학기간 제외)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 보호 및 특별 지원 제공	연중
	특수교사, 경찰, 성교육전문가 등 전문위원	 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정기/수시) 인권지원단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더 봄학생 지원방안, 현장지원 결과 분석 및 사안에 따른 대책 협의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연중
더봄학생 지원	관내 더봄학생	- 더봄학생 현황 파악 및 관리 (인권침해 경험 및 위험 학생) - 더봄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치료교육, 장애학생의 자기관 리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등)	3월 연중
찾아가는 인권보호 교육 실시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보호교육 실시 (학교별 3~4회기 실시) - 성교육, 인권·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연중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특수교사 및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학생행동중재 거점센터(익산)장애학생 행동중재 연수 및 컨설팅 참여 지원(전문가 등 연계 지원)	

마. 지원 및 협조사항

- ◎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발생 인지 시 즉시 신고 및 보고(수사기관, 교육청)
 - 피·가해 학생이 장애학생 일 경우 모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성교육 실시(매 학기 1회 이상)
-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연 1회) 적극 협조 및 안내
- ◎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4-4 특수교대상자 진단 · 평가 지원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 위원회), 제14조(장애의 초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다. 방침

-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조기 발견 및 교육적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 진단·평가 계획 수립
 - 진단·평가팀 구성: 담당 장학사(팀장), 특수교사, 치료전문가 등
 - 사전연수 실시: 진단평가의 시행 방법, 결과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한 연수
 - 검사도구 및 관련 서류 정비
 - 진단·평가 절차



※ 진단·평가 결과 처리 시 치료지원 영역 표기 여부 확인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재배치(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할 필 요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는 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군을 달리한 학교 배치는 지양)
- ◎ 취학 의무 대상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 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취학 및 재취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만3~5세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
- ◎ 과 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 취학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이 지났거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연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5.8.19.)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안내
- ◎ 진단·평가 도구 관리 및 관내 학급 대여

세부내용	대상	내용	시기
진단평가	특수교사,	- 진단평가 계획에 따른 전문위원 위촉	3월
위원회 구성	치료사 등	(특수교사, 치료사, 의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	

세부내용	대상	내 용	시기
진단평가 실시	신규 및 재배치 신청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배치(진단평가) 의뢰에 따른 절차 준수 선정 의뢰 시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실시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재심사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 통보 진단평가 결과 누적 관리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실시 >공통> 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재배치, 취학유예, 선정취소 등 특별> 만9세 이상 발달지체 선정학생 재진단・평가 상급학교 진학예정 학생(초6,중3) 중 복지 카드 미소지 학생 재진단・평가 	4월 6월 9월 11월 1월
진단평가 협의회	진단평가 위원회	- 진단평가 사전/사후 협의회 시시 (진단평가 결과 및 위원 의견서 등 협의)	연중

◎ 2022학년도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선정·배치 및 진단·평가 일정(안)

순	신청기간	진단평가 일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일정	비고
1차	3월 중	2022.4.4.~ 4.29.	5월 둘째 주	만9세 이상 발달지체 선정학생 재진단•평가
2차	5월 중	2022.6.7.~ 7.1	7월 셋째 주	상급학교 진학예정 학생 중 복지카드 미소지 학생 재진단•평가(초6,중3)
3차	7~8월 중	2022.8.16.~9.3.	9월 셋째 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배치 신청(만5세,초6,중3)
4차	10월 중	2022.11.7.~12.2.	12월 셋째주	
5차	12월 중	2023.1.10.~1.28.	2월	2022학년도 취학유예 신청 학생 심의

[※] 공문을 통해 세부 일정 안내

마. 지원 및 협조사항

-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취소 시
 - 선정취소가 결정되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중단

(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종 편의 제공 철저)

※ 세부 사항은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참고

- ◎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의 취학유예
 - 취학유예 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관리되며,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 비 및 치료지원, 관련서비스 지원 보류
 - 취학통지서 또는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배치 학교로 취학유예를 먼저 신청 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신청서를 완주교육지원청으로 제출 (1~2월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 관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관내 학교로 재배치 문의 시
 - 거주지 인근 특수학급(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도록) 안내 한 후 완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 ◎ 학군 내로 거주지 이전 시에만 선배치 가능

4-5 학부모 및 가족지원

가. 목적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특수교육기반 조성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 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다. 방침

-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협력체제 구축
 - 학부모 마을 교사 활성화(방과 후 마을 학교,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등)
 -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체계 구축
- ◎ 가족지원 강화
 - 학부모의 성장과 건강한 학교 참여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강화
- ◎ 가족단위 교육 지원 가족캠프 등 가족의 참여 확대 및 지원

세부내용	대상	내용	시기
가족 캠프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가족	- 장소: 미정 -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및 소통의 시간	1월
학부모 동아리	- 학부모 동아리 조직 및 협의(수요조사) 특수교육 - 운영계획서 수립 대상학생 - 방과후 마을학교 등 지역에서 활동할 수 학부모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완주교육청 및 지역 유관기관 활용		4월 ~11월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5-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가. 목적

-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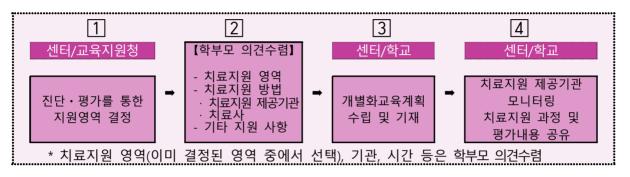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다.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필요 학생
 - 어린이집 등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기관에 재원 중인 원하는 지원 불가
 -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 한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불가
- ◎ 지원방법
 - 운영시간은 방과 후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 1)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2)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관련 프로그램 활용(**비영리기관일 경우에만 가능)
- ◎ 치료지원 영역 및 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 관련서비스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 의사 처방과 확인이 이루어지 지 않은 물리·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와 동일 영역에는 중복지원 불가
- ◎ 치료지원 제공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교육지원 의견 제시(치료지원 포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시한 교육지원 내용을 토대로 개별화교육지원팀 에서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 결정



- ◎ 치료지원 전자카드 「꿈 활짝 카드」 사용 안내
 - 카드 신청 및 발급(재발급 포함): 특수교육지원센터
 - 이용 장소: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드림스 APP,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 이용방법: 매월 1일 한도금액 생성, 매월 말일 월 잔여한도 자동 소멸
 - 치료지워 전자카드 사용 내용 정비(연 2회, 3월/9월)
- ◎ 치료지원 유관기관 모니터링 실시
 - 치료지원 모니터링 팀 구성(장학사,특수교사,관련 전문가,치료사 등)
 - 모니터링 추진 시기: 2022. 3. ~ 2023. 2.
 - 학기별로 1회 이상의 관내 모든 치료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 실시
 - 내용: 외부 치료지원 현장점검 및 관리
 - · 치료지원 기본 요건(치료실 시설 현황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 치료서비스 제공 능력(치료자 자격증 보유 여부)
 - · 치료서비스 환류 (학부모 및 학교담당자와의 상담, 치료지원 관련 서류 작성 및 학교 발송, 보관 여부 등)

라. 지원 및 협조 사항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따른 치료지원 관리 철저
 - 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시 익월 1일부터 치료지원 제공 가능
 - 취학유예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학생은 심의 후 서비스 중단
- ◎ 치료지원 대상학생 지원 지침 숙지(치료지원 전자카드「꿈활짝카드」서비스 결제 원칙)
 - 전자카드 「꿈활짝카드」 관리 주체는 학부모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 이후 매월 말일 이전 결제
 - 치료지원 서비스 이용 전 선결제 불가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 결제 금지
- 최료지원(꿈활짝카드 포함) 관리 기관 변경(2022년부터)고등학교 관리 및 지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5-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가. 목적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통학지원)

다. 세부내용

- ◎ 통학비 지원 대상자
 -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거나, 통학버스 노선 외의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
 -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
 - 중증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하여 통학버스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중 장애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라. 지원 및 협조사항

- ◎ 통학비 신청 및 지원 시기: 공문으로 안내
- ◎ 완주군청 통학교통비 지원 내용

□ 완주 군 저소득층(청소년) 통합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우선돌봄)에 해당하는 가구의 해당 학생

▲ 신청 방법?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을 받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신청
- 단, 학생에 대한 변동(학적변동, 전출, 자격변동 등) 시 보호자가 주민생활 지원과나 읍면사무소로 연락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원금액
고등학생	완주 관내 및 관외 고등학교 통학비 지원	분기별 지급 (3,6,9,12월 하순)	연/1인/432,000원 (분기당 108,000원) 학생계좌로 지급

□ 완주군 부름부릉 통학택시

- ◎ 지원대상: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중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등교기준: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 버스 이용시 제시간에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 버스 승강장을 1km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하교기준: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
- 이용요금: 탑승시마다 1,000원 (단, 기초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 : 500원)
- 이용시기: 학기 중 (※ 방학기간과 2월은 운행 안함)
- 이용방법 매학기 시작 전 해당학교에서 통학택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기준검토, 선정 후) 대상자에 한해 개별적 유선통보
 - 택시기사님과 학생간의 탑승시간 및 장소 협의

유행노선

집↔학교 ──	15km 미만	15km 이상	
	집↔학교까지	집↔버스정류장까지	
	통학택시 운행	통학택시 운행	

5-3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가. 목적

◎ 공·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실현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다. 세부내용

-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된 유아 중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 공립유치원(단설,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 및 재원 중인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 만 3세 이상으로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외대상
 - 취학의무 유예자
 - · 공사립 유치원이 아닌 기관(어린이집 등) 재원 유아
 - * 공·사립 유치원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로 기관이 비영리기관(고유번호 부여 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기관) 확인
- ◎ 지워 금액
 - 공립: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
 - 사립: 1인 월 381천원 이내 실비(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교육활동 경비)
 - ※ <u>유아 1인당 학비</u>가 사립 월 36만1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유의

◎ 지원 방법

- 일반유치원 취원 장애유아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등 모든 제경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 학기 중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선정된 경우 선정통지를 받은 달부터 특수 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가능하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5일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월 교육과정 운영일수가 15일 미만 출결 할 경우 일할 계산으로 지원함

라. 지원 및 협조 사항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도록유의
- 일반유아와 수업료를 다르게 책정하거나 지원 기준에 맞추어 원비를 인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무상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매월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15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15일 미만 출결 할 때 날짜로 계산함)

5-4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가. 목적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도보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기 적성 계발 기회제공과 교육복지 증진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6조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다. 세부내용

-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
 - 학교별 방과후학교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 특수학급 방과후과정과 일반 방과후 과정 중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자 요구를 고려하여 치료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 확대 운영
- ◎ 지원기준
 - 1개 프로그램당(4명 이상 기준, 유치원은 3명 이상) 월 60만원 지원 ※ 단.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된 유치원은 지원 제외
 - 참여 학생이 1~3명(유 1~2명)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1인당 10만원 지원
 - 유치원 특수학(교)급 중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 지원 학급은 1인당 운영비 5만원 이내 지원
 - 외부기관(비영리기관) 수강 시 1인당 10만원 지원
- ◎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지원
 - 지원대상: 유치원과정 특수학교(급)
 - 지원기준: 방과후과정 3명 이상 운영 학급

라. 지원 및 협조 사항

- ◎ 지원 제외대상: 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농어촌학교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누리과정 방과 후 지 원비와 중복 지원 불가
- ◎ 집행반납 절차(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모두 동일)

□ 집행깐액 반납 □

- 반납 기준: 지원금 10만원 이상 잔액 발생 시
- 반납 시기: 2023. 2월 중
- 반납 절차
- . 공립: 에듀파인 교육비 특별회계 징수→반납고지서 출력→납부(농협)
- . 사립 고·특수학교: 해당 학교에서 본청 재무과에 납입 고지 요청 → 반납고지서 수령 → 납부(농협)
- . 사립 중: 해당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경리부서에 납입 고지 요청 → 반납고지서 수령 → 납부(농협)
 - ※ 원단위 반납금지(국고금 관리법 47조에 근거)
- 에듀파인 시스템 반납 처리 절차
 - ① (학교회계) 2022년 회계연도 세입에서 과오납반환결의
 - ② (학교회계)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액 조정
 - ③ (교특회계) 수입관리-수입 현황-징수/반환현황-계획 작성-그 외 수입
 - ④ (교특회계) 2022년 교육비 특별회계 그 외 수입 징수결의 (학교 대상 여부:아니오)
 - ⑤ (교특회계) 반납고지서 출력 → 납부

5-5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

가. 목적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선정),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다. 세부내용

- ◎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 만성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 또는 보호필요학생
- 건강장애학생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 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보호필요학생: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질병,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 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 정신질환학생은 건강장애 학생 및 원격수업 수강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병원학교 운영 지원
 - 지원 기관: 전북대학교 한누리병원학교(http://www.jb-hospitalschool.kr)
 - 신청 절차: 소속 학교(초·중·고)에서 병원학교로 직접 공문으로 신청 (**수신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병원학교 동시 지정)
 - → 병원학교에서 입급 확인서를 소속 학교로 통보

- 병원학교 운영 형태

학교	학급 수	대상	운영형태
전북대학교병원 병원학교	1	0.ラスコ	복식학급
(한누리병원학교)	1	유·초·중·고	<u></u> 국주위법

◎ 원격수업

- 감염이 우려되거나 질병치료,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원격수업을 지원하며, 학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보호필요학생(요보호학생) 자격 요건이 충족(3개월 이상의 입원, 통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 되면 원격수업 참여 가능
- 원격교육기관은 1기관만 신청ㆍ이용함을 원칙으로 함
- 학교출석수업과 원격수업은 병행할 수 있으나, 학교 출석으로 인하여 원 격수업 출석률이 3개월 동안 1/3 미만인 경우 퇴교 권장
- ◎ 원격수업 수강 관련 절차
 - 수강 의뢰: 소속 학교장 → 전북교육청(교육혁신과) → 운영기관
 - 원격수업 수강 명단 및 철회 명단 통보(운영기관→전북교육청→소속 학교)
 - 행정 사항 통보: 운영기관 → 전북교육청 → 소속 학교방법: 소속학교 (초·중·고등학교)장→ 도교육청→ 운영 기관

◎ 워격수업 수강학생 지원

기관명	교육과정 지원 학년		홈페이지 주소
꿈사랑학교	초・중・고등학교		https://www.nanura.org
		초등학교	http://www.es.s4u.kr
λ ヲ ヮ o	학생	중학교	http://www.ms.s4u.kr
스쿨포유		고등학교	http://www.hs.s4u.kr
	교사		http://www.tea.s4u.kr
전북e학습터	초등학교		http://eschool.jbedu.kr

- ◎ 학적과 성적처리 지침 내용
 - (학적 또는 출결)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출결은 위탁 교육기관의 원격 수업 참여일 수를 기본으로 함
 - · 학교 출석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소속 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원격수업 등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음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 건강장애 선정 및 재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 하여 선정,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선정
 - ※ 건강장애 선정은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건장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절차 진행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에는 선교육 지원 가능

라. 지원 및 협조 사항

-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활용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시 전달
-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 자체 연수 실행하도록 지원
-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공문으로 반드시 원격수업 수강 해지 절차 안내(1/3 기준 유예기간 부여)

5-6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지원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성과 제고

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다. 세부내용

- 배치 기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도·중복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기준으로 운영
- ◎ 지원인력의 역할
 -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급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 특수교육지도사의 활용
 - 특수교육지도사는 중증·중복 장애학생 1~2명의 교육활동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학교 및 학급의 특수교육 관련 활동과 학생 지도에 대해 지원함
 - 특수학급 설치학교
 - : 특수교육지도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활용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영
 -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 : 특수교육지도사를 일반학급에 배치·활용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학급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

- ▶ (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항
- ☞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 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지원 역할 담당
- ※ <u>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특</u> 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특수교육정책과-4022('18.8.20.)

- ▶ (주요업무)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에 대해 지원 역할 담당
 - ※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학생 지도.평가.상담 등은 지원인력이 대신할 수 없음
-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 의 학생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 욕구 보조)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의복 착·탈의, 건강 보호 등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 활동
- (학교 적응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2022 교육부 특수교육운영계획에서 발췌

◎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특수교육지원인력 역할에 따름

분야	주임무	부수임무	복무 형태	복무기관 (근무지)
장애 학생 활동 지원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활동, 승·하차 지도·취식 등 지원	기관운영과 관련된 지원 업무 ※ 부수임무 수행 조건 • 공익목적 수행 범위 •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 부수임무 예시 • 청소, 제설작업, 행사지원 등 ※ 부수임무 제한 • 혐오 및 사고위험 분야 • 풍속사범 단속	주간	교육청 및 초·중·고 (사립포함)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참조

- ◎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근무평정 철저
- ◎ 특수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강화
 -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 **소집월부터 3개월 이내 16시간 직무교육 실시** (교육청지원청 주관, 원격/집한연수로 진행)
 - 특수교육지원인력 대상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연 2회이상 실시(학교)

◎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 절차

학교

- 특수교육담당 교사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수교육지원인력 신청

lacktriangledown

교육지원청

- 신청학생 대상 현장 실사 진행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지원 대상 학교 결정
-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전보)

lacktriangledown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특수교육지원인력 대상 연수 운영

마. 지원 및 협조 사항

- ◎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원 관리 철저
 - 근무: 방학 중 비상시 근무 직종임
 - 근무 일수: 기존 연봉 체계의 일급 단가 및 연봉기준일 수(290일)는 폐지 되고 월급 체제로 전환(2014.1.1.)됨
- ◎ 근로시간 준수 철저
 - 주 근로시간 40시간 준수,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
 - 1박 2일 이상 숙박형 체험학습에 특수교육지도사를 동반하는 경우 휴게 시간에 학생지원 업무를 하지 않도록 주의
-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해 행·재정업무 역할 부여 금지
- ◎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강화

함께 걸음으로 행복한 완주특수교육

V. 부록

- 특수학급 현황
- 2022년 업무 추진 계획표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

1. 완주 특수학급 현황

가. 유치원 특수학급 현황

[기준일 2022. 3. 1.]

		학급수	학사	생수	특수교육지도사	전화번호	
순	유치원명	(특수 교사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사회복무요원)	(교무실/특수학급)	
1	봉동유치원	2	8	3	2	261-2206 070-4454-8416 070-4454-0901	
2	봉서유치원	1	4		1 (1)	262-6225	
3	삼례중앙초 병설유치원	1	3			291-2599	

나. 초등학교 특수학급 현황

[기준일 2022. 3. 1.]

		학급수	학사	 생수	특수교육지도사	전화번호
순	학교명	(특수 교사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사회복무요원)	(교무실/특수학급)
1	가천초등학교	1	2			262-9175
	, _ 0 .					070-5153-9039
2	간중초등학교 간중초등학교	1	4	1	1	243-7012
	20-0-1-	1	7	1	1	070-7841-0311
0	コルテロシ	1	1	1		263-4025
3	고산초등학교	1	1	1		070-8898-0572
		1	4	1		222-0025
4	구이초등학교	1	4	1		070-4496-8047
	1171217	1	0			231-6468
5	남관초등학교	1	3			070-7853-8375
6	동상초등학교	1	1			243-9017
7	日にテロシー	1	Г	2		261-3240
/	봉동초등학교	1	5	3		070-4323-5229
	H 기구 C =l ¬	1	0	0	1 (1)	262-5335
8	<u></u> 봉서초등학교	1	3	3	1 (1)	070-4010-2788

		학급수	학식	생수	특수교육지도사	전화번호
순	학교명	(특수 교사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사회복무요원)	(교무실/특수학급)
9	삼례초등학교	1	4	2	(1)	291-2031 291-6161
10	삼례동초등학교	1	3			261-1470 070-4713-4248
11	삼례중앙초등학교	1	6	1		291-2599
12	삼우초등학교	1	3		(1)	263-8897 070-4713-4289
13	상관초등학교	1	3			282-5008
14	소양서초등학교	1	5		1 (1)	243-8743 070-7842-7693
15	송광초등학교	1	4		(2)	244-8111 070-7862-8787
16	용봉초등학교	1	2	1		244-3023 070-7858-8009
17	이서초등학교	1	3	3		222-8515 070-7004-9945
18	이성초등학교	1	3			221-8123
19	청명초등학교	1	5	1	1	221-8928 070-7825-1417
20	화산초등학교	1	2			263-5265

다. 중학교 특수학급 현황

[기준일 2022. 3. 1.]

		학급수	학사	생수	특수교육지도사	전화번호
순	학교명	(특수 교사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사회복무요원)	(교무실/특수학급)
1	고산중학교	1	2	2		262-4024
2	구이중학교	1	5			221-8994 279-0254
3	삼례중학교	1	5	1	(3)	291-2624 070-4088-8544

		학급수	학식	생수	특수교육지도사	전화번호
순 	학교명	(특수 교사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사회복무요원)	(교무실/특수학급)
4	상관중학교	1	3			278-9892 070-4876-4524
5	소양중학교	1	5		1 (1)	243-8650
6	완주중학교	2	8	3	1	261-3033 070-5175-1155 070-4060-7021
7	용진중학교	1	5	1	1 (1)	260-7613
8	화산중학교	1	1			262-4370

라. 고등학교 특수학급 현황

[기준일 2022. 3. 1.]

		학급수 학생수 트스큐		특수교육지도사	전화번호	
· 순 	학교명 (특수 교사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일반학급	(사회복무요원)	(교무실/특수학급)	
1	고산고등학교	1	7	4		262-4370 070-4716-2580
2	전북하이텍 고등학교	1	6	1		291-3066 070-4889-1715
3	한별고등학교	1	4			291-2738 070-7882-1012
4	완주고등학교	1	7	6	(2)	261-2620

2. 2022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추진 업무

추진업무		3월	4월	5월	6월	7월	
	진단·평가	신청기간	1차 진단·평가	신청 기간	2차 진단·평가	신청기간	
선정·배치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1차 특운위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2차 특운위 (선정·배치)		3차 특운위 (선정·배치)	
특수교육	교육과정지원	신청	;	찾아가는 교육과정	성 지원 프로그릳	!	
지원	문화예술체육	신청		상반기 문화·예·	술·체육 동아리		
진로직업	진로직업 교육	신청		상반기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	현장체험			초등 현장체험학습			
	장애공감교육	신청	ol-	설치교 찾아가는	장애공감 프로그	.램	
통합교육	통합교육지원단	지원단구성	협의회 및 안내		통	합교육 (요청)	
지원	순회교육	신청 및 선정		1학기 순회교육	실시 (3월~7월)		
	통합교육 역량강화		1차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특수교육	특수교육 역량강화			1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		2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	
전문성 신장	전문적 학급공동체				유 / 초	/ 중 특수교사	
	가족지원	신청	상반기 학부모 동아리				
지원체체 구축	보조공학기기						
十五	장애학생 인권지원	인권지원단 구성	더봄학생 지				
상담	및 홍보		연충	중 상담 및 홍보	실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 1·2월
3차 진단·평가		신청 기간	4차 진단·평가		
	4차 특운위 (선정·배치,진학)			5차 특운위 (지원인력배치) 6차 특운위 (선정·배치,진학)	
방학중 프로그램	하반기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신청	하반기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초등/중등 현장체험학습			
	미설치교 찾아가는 장애공감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				
2학기 순회교육 실시 (8월~'23.2월)					
	2차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3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		4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	
동아리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율연수) 운영					
신청	하반기 학부모 동아리			*가족캠프 별도 계획	
보조공학기기 대여(연중)					
정기현장 지원 및 특별지원 실시					
연중 상담 및 홍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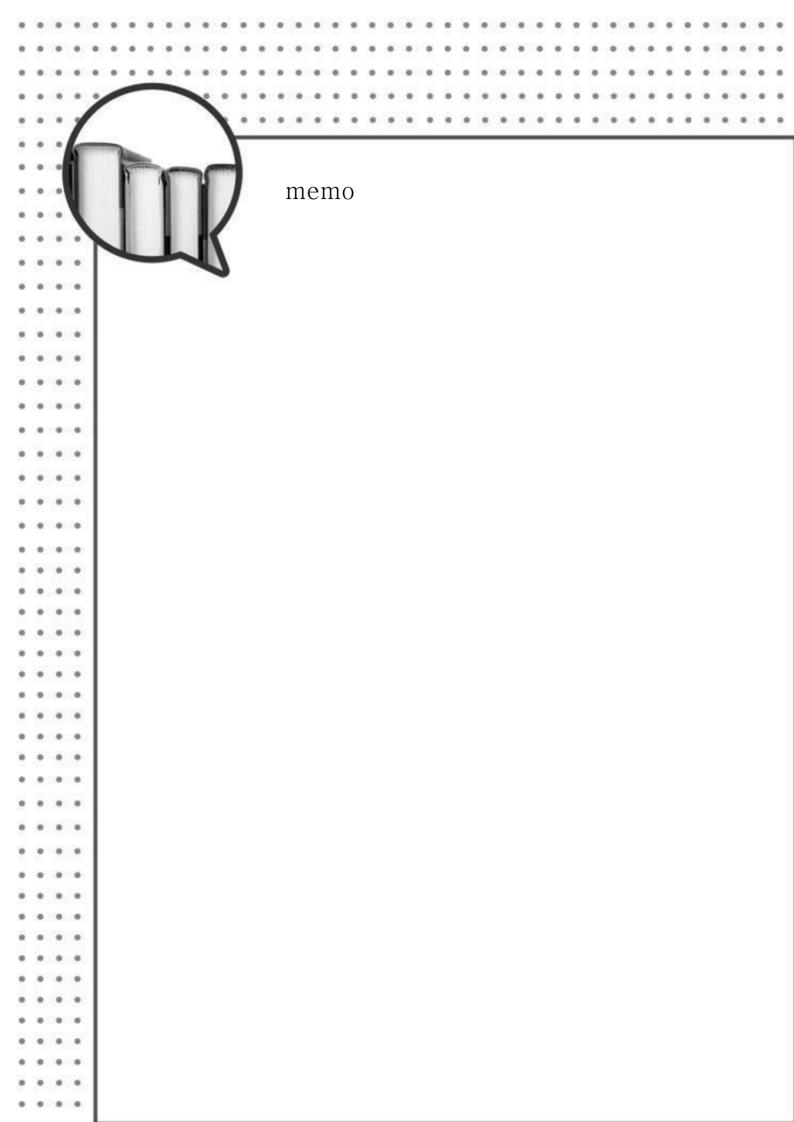
3.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추진 업무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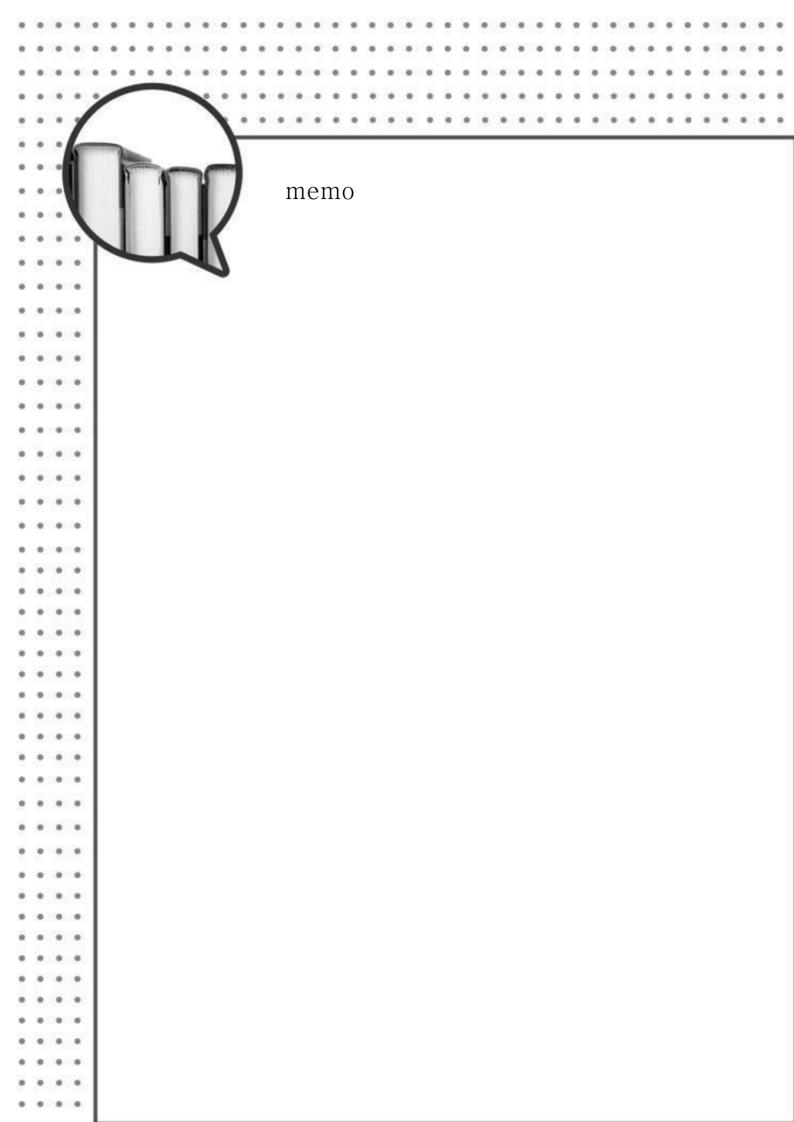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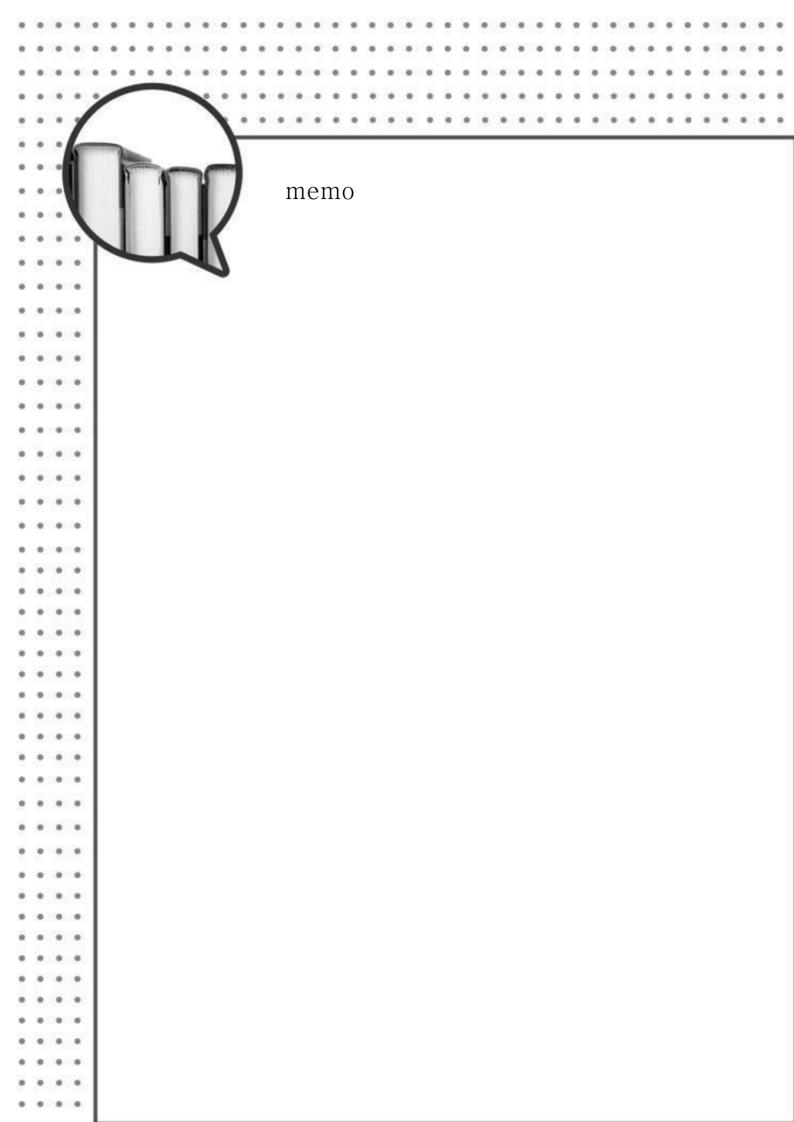
				기 • 전 년 /
월	프로그램명	대상	예산	비고
2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	특수교육지도사 및 사회복무요원	3,200	
	8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신청 학생 및 학부모	220	
	완주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	관내 특수학급 담당교사	1,270	
3	1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220	
	특수교사 자율동아리	유・초・중등 특수교사	4,500	연중
	상반기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특수교육대상학생	13,700	1학기
4	찾아가는 장애공감교육	관내 미설치교 통합학급 학생	7,555	연중
	상반기 장애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신청 특수교육대상학생	6,100	
	상반기 장애학생 체육 동아리	신청 특수교육대상학생	6,100	
	상반기 학부모 교육·동아리	학부모	4,050	1학기
	제 1차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통합교육 담당교사	1,000	
	1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신청 학생 및 학부모	850	
5	2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학생, 학부모	220	
	초등 현장체험학습	학생, 교사 및 인솔자	4,500	
	제 1차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특수학급 담당교사	1,000	
	치료지원 제공기관 현장점검	치료지원 모니터링팀	120	
	교육지원청 장애인식개선 연수	교육청 직원(70명)	500	
6	찾아가는 교육과정 지원	유·초 특수학급	5,700	연중
	2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신청 학생 및 학부모	850	
7	3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학생, 학부모	220	
	제 2차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특수학급 담당교사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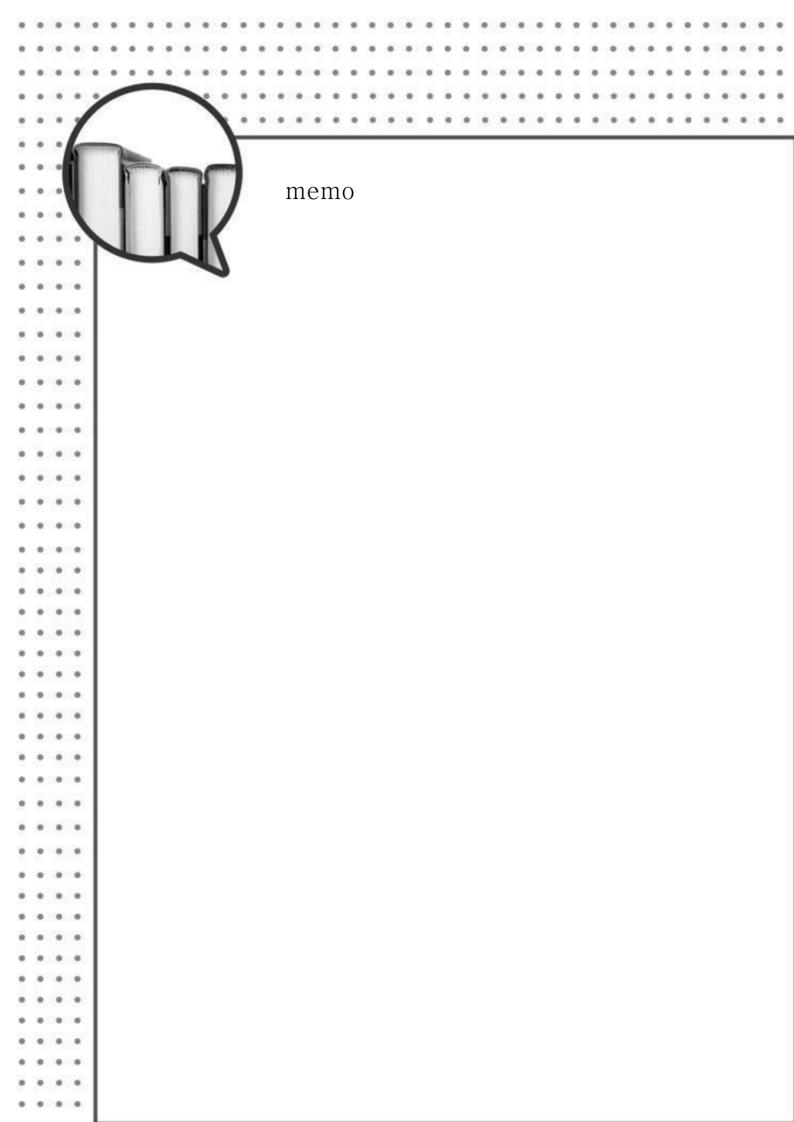
(단위:천원)

	(인기·신건			
월	프로그램명	대상	예산	비고
8	3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신청 학생 및 학부모	850	
	방학중 문예체 프로그램	신청 특수교육대상학생	3,050	
	장애학생 가족캠프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가족	재배정	
9	하반기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특수교육대상학생	13,700	
	하반기 장애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신청 특수교육대상학생	6,100	
	하반기 장애학생 체육 동아리	신청 특수교육대상학생	6,100	
	4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신청 학생 및 학부모	220	
	제 2차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통합교육 담당교사	1,000	
	하반기 학부모 교육·동아리	학부모	4,050	2학기
10	3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실시	학생, 학부모	220	
	초등 현장체험학습	학생, 교사 및 인솔자	4,500	
	중등 진로·직업 체험현장학습	학생, 교사 및 인솔자	4,500	
	제 3차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특수학급 담당교사	1,000	
	치료지원 제공기관 현장점검	치료지원 모니터링팀	120	
11	4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신청 학생 및 학부모	850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실태조사	신청 특수교육대상학생		
	5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	220	
12	제 4차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특수교사 협의회	특수교사, 센터 교사	1,000	
	6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신청 학생 및 학부모	220	
연 중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실시	순회교육 대상 선정 학생	3,600	연중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정	연중
	통합교육지원단	통합 및 업무담당교사	240	연중
	관련 서비스지원 (치료지원,순회치료,방과후학교,통학비 등)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정	









2022. 완주특수교육 운영계획

발 행 처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jbwje.kr/
주 소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
전 화	(063) 270-7606
F A X	(063) 270-7698